

- (3) 주택자금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축소(영 제106조제8항 단서)
 - (1)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2) 지방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수행하는 주차장운 영업·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 (3)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영 제116조의2제5항제4호 신설)
 - (1) 경제자유구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하되, 3년간은 100퍼센트를,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함.
 - (3)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활성화되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 외국인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됨.
- 자.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영 제116조의10제2항제5호 신설)
 - (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 면제 대상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추가함.
 - (3)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 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4조제1항제4호중 “공매·경매”를 “경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상법”을 “「상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중 “재화”를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

-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제31조제4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중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를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37조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재화 및 용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48조의2제4항제1호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정평가가액 [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공매·경매 또는 수용”을 “수용”으로,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고,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6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64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의3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6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7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제74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로 한다.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목욕·이발·미용업
-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사목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호자목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차목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호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 및 제7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내지 다목중 “대외무역법”을 각각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23조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중 “대외무역법”을 각각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

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가목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의2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교통세법시행령”을 “「교통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각호”를 “각 목”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중 “담배사업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을 “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의2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

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2호(가)목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호(사)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호(아)목 본문중 “국제금융기구의가입조치에 관한법률”을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2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6조제15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본문중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2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1조제5항 산식 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79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2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3중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

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각각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 범위·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제21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3조제1항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영 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영 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법제처 제공>